

울산지방법원 2022. 10. 11 선고 2022가단11708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대,이철원,김예은,김현호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0. 1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, 별지 목록 기재 1, 2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이은정

별지